

# 대구예술대학교 게시물 관리 규정

(제정 2021.06.14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21.10.07. 교무위원회)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의 각종 게시물(벽보, 현수막 등)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 및 게시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 대상)**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내에 부착하는 벽보 및 현수막, 모든 인쇄물 등(이하 “게시물”이라 한다)을 적용대상으로 한다.

**제3조 (게시물의 부착)** ① 모든 게시물은 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대(이하 “게시판”이라 한다)에 부착하여야 한다.

② 동일종류의 게시물은 각 게시판에 1매만 부착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게시물의 허가)** ① 교내 각 부서, 전공, 학생회 등에서 제작한 내부 게시물은 별도의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.(개정 2021.11.01.)

② 외부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.(개정 2021.11.01.)

**제5조 (게시준수 사항)** ① 게시물에는 게시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.

② 게시물의 내용은 교육목적, 사회일반통념 및 학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③ 게시물의 부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기간 경과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11.01.)

1. 행사홍보 : 행사 2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 후 1주일 이내로 한다.

2. 그 외 게시물 : 게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로 한다.

④ 게시물의 부착 및 철거로 인하여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게시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, 우리 대학교가 원상복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제반 경비를 게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⑤ 게시한 모든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자가 책임을 지며,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훼손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11.01.)

⑥ 삭제(개정 2021.11.01.)

**제6조 (게시물의 철거)** ① 이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및 부착기간이 경과된 게시물은 게시자에게 계고 후 학생처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, 철거된 게시물은 일주일 보관 후 폐기한다.(개정 2021.11.01.)

② 이 규정 외에도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일 경우 철거할 수 있다.

1. 욕설이 포함되어 있거나 모욕감을 유발하는 경우

2. 시각적인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

3. 사회일반통념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(개정 2021.11.01.)

4. 삭제(개정 2021.11.01.)

**제7조 (예외)** 총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시기) 본 규정은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시기)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